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업무방해·치료감호

[춘천지방법원 2009. 7. 3. 2009노123,2009감노1(병합)]



【전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박기환

【변호인】변호사진형균(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 2, 10, 선고 2009고단16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공소외 1의 가게에서 '한국 상품을 가게에서 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수회 폭행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 공소외 2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커터칼을들고 위 공소외 2에게 '이 씨부랄년아, 우리 엄마 아버지를 네년이 죽였지?, 네년 보지에 애를 넣어 가지고 있지?, 이칼로 네년을 난도질하여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였던 점,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폭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 여성들을 가두어 놓고 옷이나 만들어 판다고 해서 내가 혼내려고 했지... 대중이 새끼들이 시켜서 그 놈이 일본 놈의 새끼들과 결탁을 해서 옷가게를 확장해서 문을 닫으려 했지... 그래서 밖으로 그 놈을 데리고 나가 패면서 끌고 돌아다니려 했지'라고 진술하는 점, 커터칼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일본새끼들을 죽이려고산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커터칼을 식당에 가지고 들어간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니가 알아서 판단해 임마.'라고 진술하는 점 및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정신과적인 치료, 입원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원심은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법령 적용을 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되, 검사가 당심에서 청구한 치료감호청구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공소외 1의 가게에서 '한국 상품을 가게에서 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수회 폭행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 공소외 2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커터칼을 들고 위 공소외 2에게 '이 씨부랄년아, 우리 엄마 아버지를 네년이 죽였지?, 네년 보지에 애를 넣어 가지고 있지 ?, 이칼로 네년을 난도질하여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였던 점,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폭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 여성들을 가두어 놓고 옷이나 만들어 판다고 해서 내가 혼내려고 했지... 대중이 새끼들이 시켜서 그 놈이 일본 놈의 새끼들과 결탁을 해서 옷가게를 확장해서 문을 닫으려 했지... 그래서 밖으로 그 놈을 데리고 나가 패면서 끌고 돌아다니려 했지'라고 진술하는 점, 커터칼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일본새끼들을 죽이려고산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커터칼을 식당에 가지고 들어간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니가 알아서 판단해 엄마..'라고 진술하는 점 및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정신과적인 치료, 입원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원심은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법령 적용을 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되, 검사가 당심에서 청구한 치료감호청구에 대해서도함께 판단한다.

【이유】

1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공소외 1의 가게에서 '한국 상품을 가게에서 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수회 폭행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 공소외 2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커터칼을들고 위 공소외 2에게 '이 씨부랄년아, 우리 엄마 아버지를 네년이 죽였지?, 네년 보지에 애를 넣어 가지고 있지?, 이칼로 네년을 난도질하여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였던 점,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폭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 여성들을 가두어 놓고 옷이나 만들어 판다고 해서 내가 혼내려고 했지... 대중이 새끼들이 시켜서 그 놈이 일본 놈의 새끼들과 결탁을 해서 옷가게를 확장해서 문을 닫으려 했지... 그래서 밖으로 그 놈을 데리고 나가 패면서 끌고 돌아다니려 했지'라고 진술하는 점, 커터칼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일본새끼들을 죽이려고산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커터칼을 식당에 가지고 들어간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니가 알아서 판단해 임마..'라고 진술하는 점 및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정신과적인 치료, 입원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원심은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법령 적용을 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되, 검사가 당심에서 청구한 치료감호청구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한다.

【이유】

1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공소외 1의 가게에서 '한국 상품을 가게에서 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수회 폭행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 공소외 2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커터칼을 들고 위 공소외 2에게 '이 씨부랄년아, 우리 엄마 아버지를 네년이 죽였지?, 네년 보지에 애를 넣어 가지고 있지?, 이칼로 네년을 난도질하여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였던 점,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폭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 여성들을 가두어 놓고 옷이나 만들어 판다고 해서 내가 혼내려고 했지... 대중이 새끼들이 시켜서 그 놈이 일본 놈의 새끼들과 결탁을 해서 옷가게를 확장해서 문을 닫으려 했지... 그래서 밖으로 그 놈을 데리고 나가 패면서 끌고 돌아다니려 했지'라고 진술하는 점, 커터칼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일본새끼들을 죽이려고산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커터칼을 식당에 가지고 들어간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니가 알아서 판단해 임마..'라고 진술하는 점 및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정신과적인 치료, 입원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원심은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법령적용을 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되, 검사가 당심에서 청구한 치료감호청구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한다.

[이유]

1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공소외 1의 가게에서 '한국 상품을 가게에서 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수회 폭행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 공소외 2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커터칼을 들고 위 공소외 2에게 '이 씨부랄년아, 우리 엄마 아버지를 네년이 죽였지?, 네년 보지에 애를 넣어 가지고 있지?, 이칼로 네년을 난도질하여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였던 점,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폭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 여성들을 가두어 놓고 옷이나 만들어 판다고 해서 내가 혼내려고 했지... 대중이 새끼들이 시켜서 그 놈이 일본 놈의 새끼들과 결탁을 해서 옷가게를 확장해서 문을 닫으려 했지... 그래서 밖으로 그 놈을 데리고 나가 패면서 끌고 돌아다니려 했지'라고 진술하는 점, 커터칼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일본새끼들을 죽이려고 산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커터칼을 식당에 가지고 들어간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니가 알아서 판단해 엄마..'라고 진술하는 점 및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정신과적인 치료, 입원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원심은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법령 적용을 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되, 검사가 당심에서 청구한 치료감호청구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한다.

[이유]

1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공소외 1의 가게에서 '한국 상품을 가게에서 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수회 폭행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 공소외 2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커터칼을 들고 위 공소외 2에게 '이 씨부랄년아, 우리 엄마 아버지를 네년이 죽였지?, 네년 보지에 애를 넣어 가지고 있지?, 이칼로 네년을 난도질하여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였던 점,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폭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 여성들을 가두어 놓고 옷이나 만들어 판다고 해서 내가 혼내려고 했지... 대중이 새끼들이 시켜서 그 놈이 일본 놈의 새끼들과 결탁을 해서 옷가게를 확장해서 문을 닫으려 했지... 그래서 밖으로 그 놈을 데리고 나가 패면서 끌고 돌아다니려 했지'라고 진술하는 점, 커터칼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일본새끼들을 죽이려고산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커터칼을 식당에 가지고 들어간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니가 알아서 판단해 엄마..'라고 진술하는 점 및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정신과적인 치료, 입원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원심은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법령 적용을 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되, 검사가 당심에서 청구한 치료감호청구에 대해서도함께 판단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